

'9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273
----------	-----

제출년월일 : 1993.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출 건수 : 1 건 (충주공고 학생치사사건 손해배상금 지급)
- 지출결정액 : 35,000,000원
- 지 출 액 : 35,000,000원
- 잔 액 : 없 음

□ 예비비지출내역 : 불 임

□ 예비비지출조서 : 불 임

- 합의서 사본 1부.
- 판결문 사본 1부.

예비비지출내역

(단위:천원)

순번	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1	충주공고 학생치사사건 손해배상금 지급	'92. 9. 28.	35,000	35,000	0	

예비비지출조서

1. 건 명 : 충주공고 학생치사사건 손해배상금 지급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 요 액	차액부족액 (예비비 지 출)
관	항	세항	목					
2. 교 육 사 업 비				50,000	0	50,000	85,000	35,000
	1. 본 청 운 영 비			50,000	0	50,000	85,000	35,000
		2. 기획감사행정관리		50,000	0	50,000	85,000	35,000
			314 배 상 금	50,000	0	50,000	85,000	35,000
합 계				50,000	0	50,000	85,000	35,000

2. 예비비 지출사유

충주공고 학생치사 사건이 청주지방법원에서 패소 판결('92. 8. 26)되어 '92. 9. 30일 까지 85,0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92. 9. 17)되었는 바, 기정예산액이 50,000,000원으로 부족액 35,000,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였음.

3. 참고서류

- 합의서 사본 1부.
- 판결문 사본 1부.

합 의 서



사건의 표시 : 청주지방법원 91가합6372호

원고 신승배외 3인, 피고 충청북도 (교육감)

손해배상 (기)

1992. 8. 26. 판결선고된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2. 9. 30. 까지 금 팔천오백 만원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위금원 이외의 나머지 금원및 항소권을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피고가 위 1항 기재 약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5. 원고들은 위 1항 기재 금원의 수령시 영수증에 인감을 날인하고 합의용 인감증명 각 1통씩을 피고에게 교부해 주기로 한다.
6. 본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1992. 9. 17.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학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인 준



청 주 지 방 법 원

199 2 8 . 2.6판결선고	주사
199 2 8 2 6 . 원본영수	인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1가합6372 손해배상(기)

- 원 고 (1) 신 승 배 (辛 承 培)
 (2) 안 미 원 (安 美 元)
 (3) 신 종 희 (辛 宗 禧)
 (4) 신 종 복 (辛 宗 馥)

원고들 주소 충북 중원군 신니면 견학미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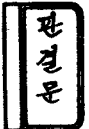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승배,

모 안미원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학림

피 고 충청북도



대표자 충청북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인준

변론종결 1992. 7. 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 신승배에게 금42,811,932원, 원고 안미원에게 금42,011,932원, 원고 신종희, 신종복에게 각 금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4.15.부터 1992.8.26.까지 연5푼, 1992.8.27.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3분의 2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승배에게 금63,856,665원, 원고 안미원에게 금62,856,665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이에대한 1991.4.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급계7호증외3내지 24, 을계3호
증외3,4, 을계4호증외 1내지3외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
건 사고의 개요 및 그 피해자와 원고들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의 개요

(가) 피고가 설립, 운영하는 충주공업고등학교 (이하 충주공고라 한다) 학생회내에는
학생들의 규율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12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지도부가 있고, 1991.4
경 소의 진경수가 그 지도 담당교사로서 지도부 학생들을 지시 감독하고, 소의 권용기
는 학생과장으로서 전교생에 대한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회 간부들과 지도담당
교사가 윤바로 생활지도를 하도록 지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지도부
학생들은 학생과 교사들의 통솔아래 1일 4명씩 교대로 08:00부터 09:00까지 교문에
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용모 복장등을 단속하고, 1주에 1회 정도 교내를 순회하여 학생
들의 용모 복장등을 단속하여 왔다.

(나) 위 진경수는 평소 지도부 학생들에게 학생들 생활지도에 있어 훈화와 설득으로 규율을 바로잡고, 폭행을 하지 말 것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진경수의 감독아래에 서가 아니면 교실에서의 규율단속을 금지할 것을 지시하며 이를 감독하여 왔으나, 지도부 학생들은 1991.4.경 당시 월3,4회씩 대개 월요일 아침에 4명 내지 5명이 허급생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 복장검사를 하여 복장이 불량한 학생들을 폭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학생과 교사들은 지도부 학생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사의 감독아래 교실에 들어가서 규율단속을 하고, 허락없이 교실에 규율단속하러 들어가거나 학생들을 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할 뿐 그 이상 지도부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1991.4.8에도 지도부 학생들이 교실에서 규율단속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지도부 학생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삼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타이른 정도에 그치고, 지도부 학생들이 교실에서 규율단속을 하며 학생들을 폭행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거나 교내순시등을 강화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지도부 학생들은 1991.4.16. 학생들의 용모상태가 나쁘다면서 점검을 할 것을

결의하고, 교사들이 직원조회에 참석중인 08:40경 지도부원인 소외 강종호외 4인이 교실을 순회하며 용모검사등을 하였는데, 토목과 2학년1반 교실에는 지도부원이 아닌 소외 김동수가 지도부원과 같이 따라 들어가 용모검사를 하면서 머리가 길던 위 망인등을 교실뒤로 세운 다음 위 강종호, 김동수가 가까이 서있던 위 망인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씩 때리고 앞으로는 머리를 각으라고 주의를 준 다음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자 위 망인이 두 발자국 걸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심장쇼크로 사망하였다.

(2) 가족관계

원고 신승배, 안미원은 위 망인의 부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 형제 자매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충주공고 학생과 교사들인 위 권용기, 진경수씨는 지도부 학생들이 월3,4회씩 하급생 교실에 들어가 용모가 단정케 못한 학생들을 폭행하여 온 사실을 잘 알았으면 그러한 일이 근절되도록 지도및 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 할것으로서, 피고는 공무원인 위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다. 피고는 위 망인이 평소 고내생활에 있어 흡연, 두발 및 복장상태 불량등으로 지도부 학생들 및 3학년학생들로부터 수차례 걸쳐 지적을 받고 지도를 당한 바 있으나 계속하여 이를 시정치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 할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3학년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이유가 될수는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입실수입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계1,3,4,5,6호종의 각 기재 및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의 연병,가동상황 및 수입등은 다음과 같다.

(가) 위 망인은 1974.2.21.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17세1개월 남짓의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 평균연령은 51.42년이다.

(나) 위 망인은 1991.2.11. 내선공사기능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달 19. 국가기술자격등록이 되었다.

(다) 내선전공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1일 임금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1.4. 현재 금23,200원이다.

(라)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생계비로 소비할 금원은 그 수입의 1/3정도가 된다.

(마) 내선전공으로는 매월25일씩 60세에 이르기까지 종사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성년이 되어 군 복무를 마치는 1996.8.21.부터 그 기대여명의 범위내에서 60세에 이르는 2034.2. 21.까지 450개월동안 적어도 내선전공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부분만큼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손차 발생할 그 손해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12분의5분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그 현가를 산출하면 그 액은 금 84,023,865 {23,200×25×2/3×(274.7181 - 57.4150)}, 원 미만 버림, 이하같다} 원이 된다.

원고 신승배, 안미원은 위 망인의 일일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무렵의 내선

전공의 시중노임단가인 금 31,330원을 기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중노임단가는 그 기준적용 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가 분명치 아니하여 객관성이나 보편성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장폐비

원고 신승배가 그 아들인 위 망인에 대한 장폐비로 금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득공제

을 제1호증외5의 기재에 본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은 위 강종호, 김동수측으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금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74,023,865(=84,023,865 - 10,000,000)원만이 남는다.

락.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 모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앞서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는 위 망인에 대하여 금7,000,000원, 원고 신승배, 안미원에 대하여 각 금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700,000원씩으로 합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입은 손해는 금81,023,865(=74,023,865 + 7,000,000)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의 사망으로 법정상속본에 따라 원고 신승배, 안미원이 각 금40,511,932(=81,023,865 × 1/2)원씩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신승배에게 금42,811,932(=40,511,932 + 1,500,000 + 800,000)원, 원고 안미원에게 금42,011,932(=40,511,932 + 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1.4.15.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2.8.26.까지 민법 소정의 연5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소정의 연2할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 8 . 26 .

재판장	판	사	한	종	원	_____
	판	사	유	병	일	_____
	판	사	경	일	원	_____

정본입니다.

19 년 월 일

청 주 지 방 법 원

법원주사 김 응

